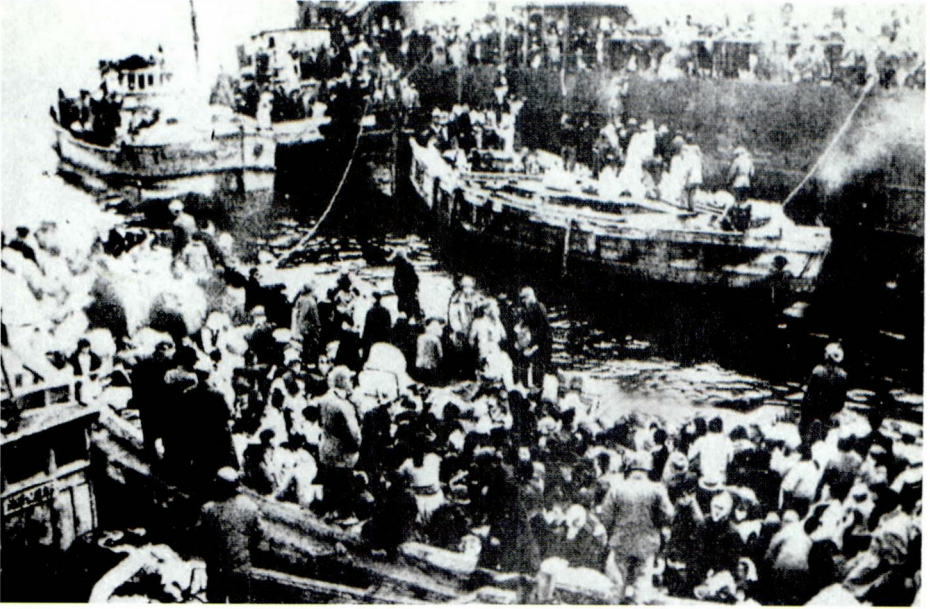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2001. 6



통 일 부



● 6.25동란중 남하하는 피난민들



● 피난민들의 행렬이 화물차 지붕위를 가득 채웠다.



● KBS의 이산가족찾기운동(1983. 만남의 광장)



● 남북혈육상봉 축구 결의대회(1992. 세종문화회관)



●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장면(1985. 서울)



●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장면
(2001. 1. 31. 금강산)



●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1985. 9. 20~23. 서울)



●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1985. 9. 20~23. 평양)



●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 8. 15~18. 서울)



●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 8. 15~18. 평양)



●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 11. 30~12. 2. 서울)



●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0. 11. 30~12. 2. 평양)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 2. 26~28. 서울)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 2. 26~28.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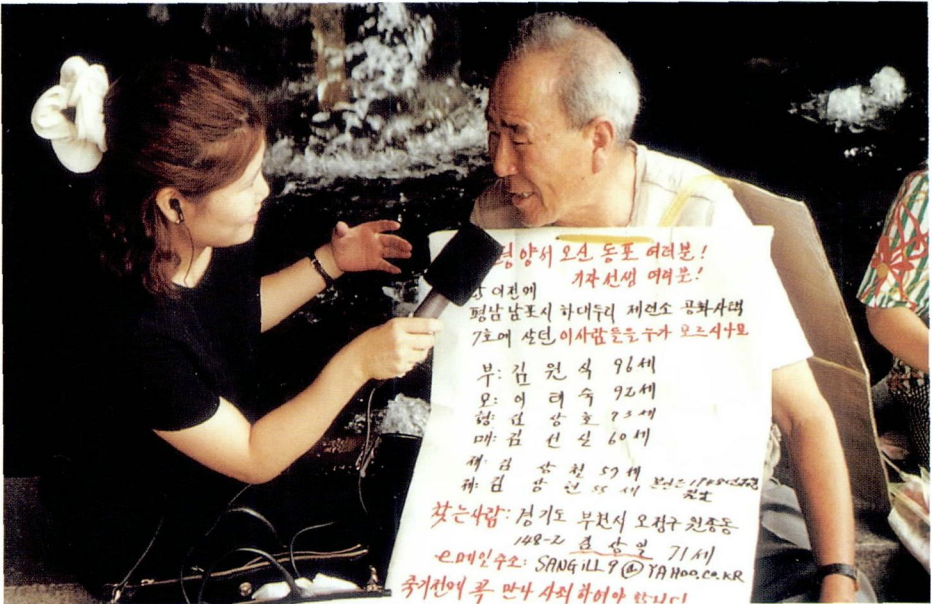
● 이산가족찾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산가족들
(2000, 대한적십자사 강당)



● 이산가족방문단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인선위원회 모습
(2000, 대한적십자사 구내)



● 방문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컴퓨터로 선정하는 모습 (2000. 대한적십자사)



● 이산가족 방문단 상봉장 부근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메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2000. 서울)



●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북측방문단의 할아버지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든 남측 가족들(2000. 서울)



●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2001. 3. 15)을 통해 우리측에 접수된 서신을 정리하는 장면(2001)

목 차

제1장 남북이산가족의 실상과 재회의 당위성

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3
가.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원인 및 특성	3
나. 남북이산가족의 의미	4
(1)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4
(2) 가족·친족의 의미와 범위	4
다. 남북이산가족의 실태	5
2.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6
가.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성격과 당위성	6
나.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국내외적 규정 근거	9
(1) 민족적 차원(군사정전협정 및 남북합의 규정)	9
(2) 국제적 차원(국제인권규약 등)	12
3.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16
가. 80년대 중반까지의 이산가족 차별정책	16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관련 기본태도 및 80년대 이후의 변화	17
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측의 태도 변화	18

제2장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현황

1. 당국 및 적십자사를 통한 해결 노력 23
가. 국민의 정부 이전 23
나. 국민의 정부이후의 노력과 성과 26

2. 민간차원의 해결 노력 32
가. 제3국을 통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 32
나.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34
다.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 및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 37

제3장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절차 안내

1.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43
가.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절차 43
나. 생사·주소확인자 등 선정 절차 44

2.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44
가. 재북가족과의 접촉 44
 (1) 접촉의 개념 및 대상범위 44
 (2) 남북이산가족 접촉 절차 45
 ① 북한주민접촉 신청절차 45
 ② 접촉 결과보고 47
 ③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47

④ 사후신고	48
(3) 남북이산가족 교류·접촉의 방법	48
나. 남북한 왕래	49
(1) 남북한 왕래의 개념	49
(2) 남북한 왕래 절차	50
① 북한방문 절차	50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50
㉡ 방문기간	50
㉢ 북한방문 안내교육	51
㉣ 출입심사	51
㉤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및 결과보고	53
㉥ 신청의 처리	53
② 남한방문 절차	55
다. 재외국민의 이산가족 교류절차	55
(1) 재외국민의 범위	55
(2) 재외국민의 이산가족 교류절차	56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56
(4) 이산가족 교류주선의 경우	57
라.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	57
(1) 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의 개념	57
(2) 협력사업 추진절차	57
① 협력사업자 승인절차	57
② 협력사업 승인절차	58
③ 협력사업자 보고	59

IV 목 차

마.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59
 (1)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59
 (2)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지원 60

바. 관련부서 및 지방접수기관 등 연락처 61
 (1) 이산가족 북한주민 접촉신청 접수창구 61

사. 북한주민접촉시 유의사항 62
 (1) 생사 및 주소확인의 경우 62
 (2) 서신교환의 경우 63
 (3) 상봉하는 경우 63
 (4) 결과보고서 제출 65

부 록

I. 남북이산가족 관련 법령 69

II. 남북이산가족 관련 남북간 합의문건 117

III. 남북이산가족관련 회담 개최상황 및 주요 합의내용 149

IV. 남북이산가족관련 단체현황 167

V.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 등 관련 서식 175

제 1 장



남북이산가족의 실상과 재회의 당위성

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2.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3.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1. 남북이산가족의 실상

가.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원인 및 특성

이산의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강제납치나 의용군 강제입대, 일본에서의 북송, 38도선에서 휴전선으로의 변경, 남북 및 북한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또는 착취와 수탈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중국 만주 등지로 이주
- ② 일제 대동아전쟁시 징병·징용 등으로 인해 중국·일본·사할린 등지로 강제동원
- ③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38도선에 의한 인위적 남북분단으로 왕래와 교류가 차단, 공산화정의 탄압을 피해 수백만명이 자유를 찾아 월남
- ④ 6.25동란 기간중 백여만명의 피난민이 남하하였고 수십여만명이 강제 납북되거나 의용군 명목으로 납북되고 수많은 행방불명자와 월북자가 발생
- ⑤ 휴전이후 북한측에 강제 납북되거나 북한지역을 이탈해 제3국이나 한국에서 살게 되어 가족과 친척이 이별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상 ‘이산’이라고 할 때는 전쟁이나 무력충돌로 생긴 경우를 말하나 한반도의 경우는 6.25동란 이외에 강대국에 의한 국토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정전상태하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족이산 등을 포함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나. 남북이산가족의 의미

(1)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하며,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남·월북자 및 정전협정 이후의 남·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광의로 볼 때는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 형제자매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의 신분관계를 회복·형성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친족의 의미와 범위

국제법상 가족에 대한 유권적 정의는 없으나, 가족은 인간사회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국가 및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체로 가족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구성되나 혼인 외의 자가 더해질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는 제9차('85.8) 적십자·분회담에서 ‘가족’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자녀로 합의했으나 ‘친척범위’는 남측이 방계 8촌, 처·외가 4촌을, 북측은 이외에 당사자가 요구하는 친척을 주장했으며,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상봉가족 대상 협의시 남측이 이를 수용해 합의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제4항)에서는 “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부부, 부모와 자녀, 직계존속 및 손자녀 등으로 하되 문화적 관습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서독간에는 '63년 서베를린과 동독간의 통행협정에서 부부, 부모, 자녀, 조손, 형제자매, 숙·백부모, 조카, 그들의 배우자를 방문

허용대상으로 했고, 중국·대만간에는 대만이 4촌이내의 친척으로, 중국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다. 남북이산가족의 실태

북한의 월남자 가족과 남한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과 강제이주정책으로 북한거주가족에 대한 거주확인이나 소재파악이 야기할 위험성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남북이산가족들이 소식알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남한에서도 지금은 철폐되었지만 연좌제로 인해 남북이산가족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상태가 은연중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남북이산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또한 분단상태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혈육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1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숫자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 및 실향민 수의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친척개념으로 볼 때는 실향민과 남북이산가족 숫자를 동일하게 보아도 무리가 없다. 통상 남북을 합쳐 실향민 및 납북자 등과 그 가족친척을 포함할 때 1천만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월남자 가족과 남한출신가족이 전체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이산가족 추정치 >

(출처 이북5도위, 70년도, 단위 : 명)

출 신 지 역	인 원 수
함 경 북 도	597,000
함 경 남 도	1,206,000
평 안 북 도	843,000
평 안 남 도	1,133,000
황 해 도	1,365,000
군사분계선 이북 경기 및 강원도	319,000
합 계	5,463,000

※ '70년 이북5도위의 가호적 신고자 기준, '71~'96 기간의 인구증가율 (40.34%)감안, '96.12 기준 767만명 추정

2.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가.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성격과 당위성

국토가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고난을 겪은 우리민족은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안은 채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이유로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왔다.

가족은 인간본성의 집단체인 동시에 인류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어느 사회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불가침성과 가족구성원간 통신의 자유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법과, 제네바 협약 등 인도법전에

보장되어 있는 강행규범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보장하려는 인도주의 문제로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온민족이 한마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남북분단 상황에 연유한다.

우리의 분단은 국토분단, 이념대립, 민족분열을 의미하며 분단의 원인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한 미·소 강대국에 의한 38도선 분할에 있다. 더욱기 우리는 북한지역의 공산통치와 분단 이후 민족간의 전쟁을 통하여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가족이산을 촉발시킨 후 상호불신 속에서 적대적 대치상태를 지속시켜 왔다. 그 결과 탈냉전시대로 이념의 퇴조를 가져온 오늘날에도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간에 대화가 재개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산가족간의 자유로운 교류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이산의 비극이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제정치적 분단과 민족적 수난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통신교류와 재회를 추진할 권리가 있고 남북당국은 책임지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미·일·러·중의 주변국들도 이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전의 규정에 의거한 도의적·법률적 책무인 것이다.

둘째, 민족분단과 가족이산으로 개인이 겪는 인간적 고통과 비애는 필설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혈육의 정’이란 본능적인 것

인데 부모처자와 형제자매가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만나지 못하며 마음놓고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지내다 한을 품은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점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며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민족으로서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하나, 독일과 달리 3년간의 내전과 반세기 동안의 적대적 대치로 인한 상호불신의 골이 깊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은 곧 민족전체의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정착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 이산가족 교류의 당위성이 주장된다.

넷째, 인권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대이다. 오늘날 가족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은 충돌당사국은 물론 모든 국가에게 이산된 가족간의 통신자유 보장과 재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재회의 권리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섯째, 이산1세대가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재회의 시급성에서 오는 당위성이다. 헤어진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고 후세대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가 적어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크다.

가족재회에 성공한 이산가족들이 그 동안 살아온 배경 등이 달라 감격과 기쁨이 지나간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여 주

듯이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는 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얼마 남지 않은 이산1세대들의 생존기간 중에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인도적 과제이다.

나.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국내외적 규정 근거

(1) 민족적 차원(군사정전협정 및 남북합의 규정)

남북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민족내부간 및 남북간에 합의한 규정으로는 ① 1953년 7월 27일자 한국군사정전협정의 제3조59항(실향민 귀향)에서 귀향하기를 원하는 자의 귀향편의 촉구조항, ②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제3항 및 4항, ③ 1972년 11월 4일자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1항, ④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담('92.8.27~9.2, 평양)에서 합의한 의제 5개항과 제4차 본회담('72.11.22~24, 서울)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⑤ 1992년 2월 19일자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8조(인도적 문제) 및 동 합의서 제3장(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교류협력부속합의서('92.9.17 발효)의 제15~18조, ⑥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제3항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2000.6.30)와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2000.9.2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2001.1.31) 그리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9.1) 제1항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9.30) 제2항,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12.16)

제4항과 5항 등을 들 수 있다.

상술한 남북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제15~18조)은 이를 구체화하여 ① 제15조에서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제16조에서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제17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④ 제18조는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주도적 역할은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회가 맡아 수행하고 쌍방 당국은 이를 적극 지원·협조·후원·보장해 주도록 합의되어 있다.

「남북공동선언」 3항에서는 ‘남과 북은 올해(2000년)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였다.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에서 8.15에 즈음하여 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것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에 합의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전문 내용은 별첨 부록 참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제1항에 ‘남과 북은 올해(2000년)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사업을 두 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는 남북적십자단체들이 검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에서 이산가족방문단 추가 교환 및 생사·주소확인 사업 시행, 서신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제2항에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다시 합의하였고,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도 제4항과 5항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제2차 생사·주소확인 대상자 명단 교환,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의 서신교환 등에 합의하고,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확대와 면회소 설치문제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 국제적 차원(국제인권규약 등)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법·제도적 토대로는 한국군사정전협정(국제연합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과 중국을 타방으로 하여 1953.7.27 체결)이 있는데 제3조 59항(실향민 귀향)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은 귀향하기를 원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이남) 거주자에 대해 이남(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협조하며, 이를 위해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토록 규정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과 북한이 공동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인도법 관련 다자조약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Ⅳ협약」은 제26조에서 이산가족 재회를 목적으로 하는 조회에 대하여 충돌당사국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산이 동협약 가입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1950년 7월 4일 한국정부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제네바협약의 원칙준수를 선언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북한당국도 같은 취지의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Ⅳ협약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둘째, 제네바제Ⅳ협약에 추가된 국제적 충돌에 관한 의정서(제Ⅰ 추가의정서) 제74조는 무력충돌의 결과로 이산된 가족의 재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야 할 채약국의 의무를 다시 강조하여 규정하였다. 남북한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쌍방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B규약)이 있다. 특히 제12조는 자유로운 주거선택 및 이전의 권리, 자유로운 출국 및 귀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4

일 북한은 1981년 9월 4일 각각 B규약에 가입했으므로 동 규약은 남북한에 대해 공히 법적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영역을 외국령으로 보든 자국령으로 보든 불문하고 모든 이산가족의 퇴거 또는 귀환을 허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1997년 8월 제4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하여 북한이 동 규약 가입탈퇴를 선언하고 다른 인권규약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자 1997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인권장전이기에 때문에 탈퇴가 불가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넷째,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제16조)에서도 신성불가침성이 명시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재결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 헌장 제1조제3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인도적 성질을 가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UN의 목적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며(제55조C항), UN회원국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N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6조).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7일자로 UN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다자조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되어 있다.

다섯째, 적십자의 기본정신과 의무로 기본임무중에는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심인사업이 있어 제18차 적십자 국제회의(1952년, 토론토)를 비롯, 이산가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는 조속히 가족재회를 촉진할 것을 수차에 걸쳐 결의하였고, 국제인도법 전문가 회의(1974년, 피렌체)에서는 결의문 제2호로 한국이산가족문제를 채택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 관련 국제협약 제규정

근 거	조항 및 내용
<p>전시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제Ⅳ 협약('49.8.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 : 총돌 당사국의 가족통신 지체금지 및 신속전달 의무 ○ 제26조 : 이산가족 재회목적 조회에 대한 총돌당사국의 편의제공 의무 및 상호연결 회복 장려 ○ 제27조 : 가족권의 존중을 받을 권리 ※ 한국 '66.8.16, 북한 '57.8.27 가입
<p>국제적총돌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 ('77.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 : 가족·친척의 운명에 관한 알권리 보장 ○ 제74조 : 무력총돌로 이산된 가족재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고 재결합 장려를 채약국 의무로 강조 ※ 한국 '82.1.15 비준서 기탁, 북한도 기탁
<p>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66.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 주민의 자유로운 주거선택과 이전권리 및 출국·귀국 권리 보장 ○ 가족통신에 대한 불법간섭 배제 및 침해불가 규정 ※ 한국 '90.4.10, 북한 '81.9.4 가입(41조의 가입국 상호제기 조항 유보) ※ 북한은 5년마다 제출토록 되어 있는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 '97.8.21 제49회 UN인권소위에서 “북한에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에 대해 북한은 8.23 외교부장 명의로 동 규약 탈퇴를 선언했으나 10.29 「UN인권이사회」는 B규약이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이 고 탈퇴허용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탈퇴불가 결의 및 철회압력 강화
<p>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66.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근 거	조항 및 내용
세계인권선언 (‘48.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 가정통신에 대한 불법간섭 배제 및 보호권리 ○ 제13조 : 모든 사람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출국 권리보장 ○ 제16조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기본적 기초단체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소식을 받고 재결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유엔헌장 (‘45.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및 이를 위한 유엔과의 협력의무 규정 ※ 한국 및 북한 ’91.9.17 동시 가입
제18차 적십자국제회의(‘52, 토론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접촉회복에 대한 정부와 적십자사의 노력 촉구
국제인도법전문가회의 (‘74, 플로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의문 2호 : 한국과 북한 적십자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하에 회담지속 촉구
전시인도법외교회의 (‘76.4, 제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재회는 단순한 「자기 가족의 소식을 알리는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소식을 알권리」로 규정
인도적 접촉에 관한 CSCE 결의문 (‘75,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들은 가족간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방문에 우호적 고려 요청
제2차 세계인권회의 비엔나인권선언 (‘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보편성 문제로 인권유린 방관 불가 제기 및 시민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역할 강조
국제언론인협회 (‘95.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인권상황과 언론자유 및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 촉구 결의안 채택

3.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실상과 태도

가. 80년대 중반까지의 이산가족 차별정책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에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철저한 계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도 성분조사 결과에 따라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처벌하거나 산간지역으로 분산이주시키는 등 차별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북한인구의 태반을 차지하는 월남자 가족들의 불만이 야기되자 이들에 대한 포섭정책을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사상재검토사업을 실시하여 4부류로 세분하고 탄압과 감시를 하는 1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류는 선도한다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의 직장선택, 진학 및 군복무와 입당 등에 있어 차별이 계속되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노동의욕이 상실되는 등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경 재차 성분정책 완화방침을 채택하면서 월남자 가족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상개조’라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월남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성분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져 때로는 숙청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집단수용을 당하기도 하였다.

나. 남북이산가족 교류관련 기본태도 및 80년대 이후의 변화

냉전 시기 북한은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대남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용하였다. 북한은 1971년 우리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전격 수용하였으나 자유왕래를 위한 '법률적 조건 철폐'와 '사회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과 인적교류가 자본주의 사조 및 민주적 사고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당국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 등 필요에 따라 일회성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1985년의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및 외화획득, 그리고 미주지역의 친북 세력 형성을 위해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과 이산가족상봉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식량난 심화에 따른 주민의 탈북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연변지역의 친척 등을 매개로 한 남북이산가족의 간접교류가 점증하자, 북한은 중국 국경지역에서 감시와 통

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 당국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8년 3월 1일부터 당시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산하에 이산가족주소 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김일성이 생전에 이산가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1998.4.8자 「평양방송」 보도)하는 등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대북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북측 관련기관의 인원들이 증개인 등을 통해 이산가족들에게 접근해 오는 경우도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측의 태도 변화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2000년 6월15일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 제3장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 시범적 사업이 논의되었다. 북한측은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1차례의 서신교환에 호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은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001년 1월 10일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2001.1.10)를 열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 사이에 합의된 협력과 교류의 일정을 적극 실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을 발표하였다. 호소문 내용중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2001년 2월 방영된 북한의 TV드라마 「수평선」에서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월남자 아들이 끝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재북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들도 “「6·15 공동선언」 이후 월남자 가족들의 신분제약이 많이 완화되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대내적으로 월남자 가족에 대한 통제를 다소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측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응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장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현황

1. 당국 및 적십자사를 통한 애결노력
2. 민간차원의 애결노력

1. 당국 및 적십자사를 통한 해결 노력

가. 국민의 정부 이전

그 동안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정치·군사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은 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일찍이 1971년부터 북한측과 협의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한편 정부는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통일부 인도지원국내에 설치('96.12, 인도2과; '99.5 이산가족과로' 개칭, 2001. 4. 24 이산가족 1·2과로 확대개편)하여 남북이산가족 관련 각종 정책을 입안·처리하고 남북이산가족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등 남북이산가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문제는 인도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남북간의 대화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측의 계속된 노력과는 달리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측이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가족·친지의 생사와 주소를 알리는 문제, 서신거래, 상봉, 재결합 등 양측이 합의한 의제 5개항의 추진에 노력한 반면, 북한측은 「법률적·사회적 장애제거와 환경개선」을 선결조건으로 계속 주장해 교착·중단 상태에 있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대한적십자사 제의('71.8.12)로 첫 회담('71.8.20)을 시작한 이래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까지 20여년간 70여

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회) 개최되었다. 그간 진행된 남북간 회담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산가족문제 관련성과는 1985년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과 1991~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타결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은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85.5.27~5.30, 서울)에서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래,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과 4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교환('85.9.20~9.23, 각 151명)이 성사되었다(가족 상봉은 우리측 35가족, 북한측 30가족 상봉 실현).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 후 우리측은 1986년 구정을 기해 제2차 방문단 교환을 제의('85.12.3)하였으나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구실로 회담을 거부하였다. 제6차 적십자실무대표 접촉('89.11.21)에서 1989년 12월 8일 총 규모 571명(고향방문 각 300명)을 교환하기로 힘들게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이 혁명가극 공연을 주장하는 등 회피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1990년 9월에는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추진하면서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제기하여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0~13)에서 남북이산가족재회 관련 조항인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합의하였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에서는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 합의한 방문단의 정례교환,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계속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더우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2.5.5~5.8)에서는 첫 시범사업으로 광복절을 기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각기 240명중 노부모 100명)에 합의해 놓고도 실무절차 협의과정에서 북한측이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무산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조차 제1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92.10.29)할 것을 합의한 이후 중단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이산가족 상봉과 민족 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8.15 민족대교류기간」(8.13~8.17)을 선포하고 북한측에 개방을 촉구하였다. 8월 4일~8월 8일간 총 61,355명의 방북 신청자를 접수하여 북한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1992년 7월 「7.7선언」 4돌을 맞아 국무총리가 대북 전통문을 통해 남북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상봉 및 왕래와 자유귀환·정착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다.

문민정부 출범후 우리 정부가 이인모 노인을 무조건 북송('93.3.19)시키면서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에 응분의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의 NPT탈퇴선언('93.3.12)으로 긴장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자 남북한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였으나 무산된 후, 1994년 7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되어 우리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도 해결할 준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회담이 무산된 후,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해 우선 추진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간에 기 합의된 사항을 협의·실천하기 위한 당국 및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계기별로 30여회의 성명과 대북전통문 등으로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3년 3월 26일에는 통일부총리가, 1993년 5월 12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남북간의 현안인 핵문제와는 별도로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판문점 우편물 교환소와 면회소 설치를 제의하였다. 1995년 2월 3일에는 통일부총리 명의의 대북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필요한 생활물자를 주고받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촉구하는 등 회담재개를 계속 제의한 바 있다.

한편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민간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1997년 5월부터 북경에서 재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문제도 거론하였으나 북한측에서 남북이산가족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별도 협의해야 할 문제임을 이유로 거부하여 큰 진전은 없었지만, 개인지정기탁제의 실현 등 남북이산가족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국민의 정부이후의 노력과 성과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취임사,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재회는 가능하면 빨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중심의 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체 결성’, ‘영세 이산가족에 대한 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고령이산

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회담추진(생사 및 주소확인, 우편물 교환 실현,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고향방문 실현)'이며, 정부는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남북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밝힌 취임사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하는 등 남북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5차 남북 적십자 대표접촉(1998.3.25~3.27)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에 비료 20만톤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 1998년 4월 4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과 남 사이의 비료 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4월 11일 북경에 보내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담장소를 판문점이나 한반도내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경 개최를 수용함으로써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당국대표회담('98. 4. 11~17)에서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 설치, 고향 이산가족 상봉 및 시범적 사업으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실시와 북측이 요구한 비료지원을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부대조건 없이 비료 50만톤을 먼저 지원해주고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추후

협의한다는 원칙을 고집하여, 3년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 당국간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1998년 4월 남북당국대표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간에는 공식대화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옴에 따라 1999년 4월 23부터 6월 3일에 걸친 비공개 접촉을 가진 결과, 북한에 비료 20만톤 지원과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인 당면문제를 협의할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을 6월21일부터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에 입각하여 식량난으로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하여 식량증산을 돕는 한편,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타결하고, 기타 협력문제도 논의한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도 우리의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간에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차관급회담은 북한측이 6월15일 북한군함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에 따른 교전사태 등에 대한 우리측의 사과 등 회담 외적 사항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또다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특히 2000년3월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부차원의 남북경협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국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에 호응해 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남북정상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며, 평화와 화해·협력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문제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분야에서 남북간 대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남북공동선언 제3항의 「인도적문제」 해결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2000.6.27~30)되어 ①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하며, ②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어 협의·확정키로 하고, ③ 북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9월초에 송환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교류 정례화와 제도적 해결장치의 기초를 마련했다.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8월 15일~18일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 100명)이 국민적 관심 속에 교환되었으며, 총 1,170여명의 가족·친척(남측 100명이 북측가족 218명을 평양에

서 상봉, 북측 100명이 남측가족 750여명을 서울에서 상봉)이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9월 2일에는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2000년내에 두차례 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합의함에 따라 9월 20일~23일에는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다양한 남북이산가족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동 회담에서는 ① 이산가족방문단을 연내 2차례 추가로 교환(11.2~4, 12.5~7)하고, ② 시범적 생사·주소확인(9,10월 각 100명)과 서신교환(11월 300명)을 추진하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③ 면회소 설치·운영문제는 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쌍방이 이산가족찾기신청을 한 사람(우리측은 10만여명)의 명단을 한꺼번에 교환하여 생사·주소를 확인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규모의 시범적 생사·주소확인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 바, 우리측은 1세대 이산가족의 노령화·건강상태·이동시간과 거리·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숙박시설 등을 감안하여 금강산에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당일상봉은 판문점, 숙식상봉은 금강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수정제의 하였으나, 북측은 금강산만을 고수함으로써 면회소설치 장소문제가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제3차 회담을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교류 일정에 따라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100명의 명단은 9월 30일 교환하였으나, 그후 북측은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일체의 합의된 일정을 지연시켜오다가 10월 27일야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1월 30일~12월 2일 교환할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2000년 11월 30일~12월 2일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 100명)을 교환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총 1,220여명(남측 100명이 254명의 북한가족을 상봉하고, 북측 100명이 770여명의 남측가족 상봉)의 가족·친척이 상봉하였다.

한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에서는 그동안 북측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던 이산가족교류를 금년(2001년)초로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각각 100명씩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2월말에는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각 100명)교환, 3월에는 300명 정도의 서신교환을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곧이어 열린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상술한 시범적 사업의 구체적 날짜를 확정하여 2001년 2월26일~28일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의 서신을 3월15일 판문점에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100명의 생사확인 대상자 명단을 2월 9일 교환하여 그 결과를 2월23일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 방문하여 남측 100명이 243명의 북측가족을 상봉하고, 북측 100명이 남측가족 800여명을 상봉하였다.

1차 생사주소 확인의뢰 결과, 남측 의뢰자중 86명이 375명의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북측 의뢰자중 99명이 639명의 남측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2차 생사·주소확인자 100명 명단을 교환한 결과, 남측 의뢰자 79명이 291명의 북측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북측 의뢰자 92명이 606명의 남측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남북 각 300명의 서신이 교환되었다.

특히 남북자 및 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교류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2차 방문단에 2명(국군포로1명, 남북자1명), 제3차 방문단에 3명(국군포로2명, 남북자1명)등 모두 5명의 재남가족이 평양에서 가족상봉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이산가족교류실적을 종합해 볼 때,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603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총 3600여명의 가족·친척을 상봉하였고 남북 각기 300명씩 서신을 교환하였으며, 총 1만여명의 생사가 확인되었다.

2. 민간차원의 해결 노력

가. 제3국을 통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

남북이산가족들의 가족 재회를 위한 열망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교류가 있기 이전에도 제3국을 통해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해외동포와의 교류라는 작은 물꼬를 이용하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의 순수한 노력의 결실이다.

남북이산가족의 교류는 정부가 「7.7특별선언」(1988)의 후속 실

천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1989. 6.12)에 따라 시작된 이래,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교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경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 교류를 지원해 왔으며, 2000년 3월 2일에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더욱 촉진하고자 「이산가족교류촉진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승인 유효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과거 60세 이상에서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되는 등 행정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해 오던 교류경비지원도 생사확인 40만원→80만원, 상봉 80만원→18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교류지속경비 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경비지원 횟수도 종전의 1회에서 3회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1년 4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5,805건으로 이중 15.1%인 2,382명이 제3국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645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고,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총 12건이 성사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4월말 현재까지 당국차원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생사확인 2,752건, 서신교환 2,829건, 상봉1,100건(제3국 상봉 482건, 방북·방남 상봉 618건)이 성사되었으며, 이것은 과거 연평균 대비 생사확인 6.9배, 서신교환 1.9배, 상봉 13.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민간차원의 교류촉진 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남북 이산가족교류는 이산가족찾기 신청 84,757건, 생사확인 1,239건, 상봉 558건, 서신교환 1,023건에 이르렀다.

나.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이산가족들이 재북가족과 접촉하는 방법은 ① 해외거주 친척·친지 등의 방북 등을 이용한 생사·주소 확인 및 교류, ② 이산가족의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 이용, ③ 국내외에서의 중국 조선족 등 중개인의 도움, ④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 중개자별 성사현황(당국 + 민간)

(’89.6.12 ~ ’01.4.30 기준, 단위 : 건)

구 분	남북 당국	해외 동포	주선 단체	언론 매체	기타	무기재	계
생사확인	1,408	1,612	408	124	80	158	3,790
비 율	37.1	42.5	10.8	3.3	2.1	4.2	100
상 봉	606	509	69	24	48	7	1,263
비 율	48.0	40.3	5.5	1.9	3.8	0.5	100

제3국을 통한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중 수교이후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

증하여 최근의 남북 당국간 협의에 의한 교류를 제외하면 '89.6.12 ~ '01.4.30까지의 통계수치의 74%에 이른다. 제3국 상봉 중 중국에서 상봉하는 비율은 96%, 중국 현지동포들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도 77%에 달하고 있다.

o 중개지별 성사현황(당국 + 민간)

('89.6.12~'01.4.30 기준, 단위 : 건)

구 분	남북한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기타	무기재	계
생사확인	1,414	1,615	370	119	59	56	157	3,790
상 봉	618	621	-	18	-	6	-	1,263

교류가 성사된 재북가족의 거주지역은 함경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이산가족교류 거점인 중국 연길지방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00.12.31 기준)

구 분	함경	평안	황해	양강	자강	강원	평양	개성	남포	기타	계
생사확인	1,071	505	298	66	33	48	168	34	32	64	2,319
비율(%)	46	22	13	3	1	2	8	1	1	3	100
상 봉	339	81	45	52	8	6	34	1	11	39	616
비율(%)	55	13	7	9	1	1	6	-	2	6	100

제3국을 통한 교류를 위해서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고,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교류당사자

들의 신변안전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외 연고자가 없는 이산가족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신교환과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주선사업을 승인 하였으며, 2001년 4월말 현재 31개의 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연도별 남북이산가족교류 현황 >

(2001. 4. 30 현재,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소계 (평균)	'98 3-12	'99	'00	'01	소계 (평균)	총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	127	132	221	135	104	96	164	24	1,038 (120)	353	481	447	63	1,344 (424)	2,382
서신교환		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85	4,132 (477)	384	637	984	162	2,167 (684)	6,299	
제3국상봉				11	19	12	11	17	18	61	8	163 (19)	100	195	148	39	482 (152)	645
방북상봉												-	1	5	4	2	12	12
당국차원	생사확인	6									65			792	616	1,408	1,473	
	서신교환													39	623	662	662	
	방남상봉	3									30			201	100	301	331	
	방북상봉	3									35			205	100	305	340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설치·운영, 남북간 자유로운 왕래 및 가족간 재결합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연도별 남북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현황 >

(2001.4.30 현재, 단위 : 만원)

'98년		'99년		'00년		'01년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6	6,744	231	16,270	314	27,925	82	9,050	59,989(723건)

다.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 및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

정부의 다각적 노력과 함께 국내의 민간단체 및 언론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국내외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왔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체 명	주 요 활 동
대한적십자사 (해외동포모국 방문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부터 이산가족들의 소재확인 추진, 현재까지 국내접수분 11만여건중 4,800여건 확인, 해외접수분 5,200여건중 1,500여건 소재 확인 ○ '75년부터 조총련계 재일동포 56,000명 모국방문, '89년부터 사할린동포 9,883명 모국방문
조선일보사	'64년 「한적」의 협조하에 「남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한국일보사	'61-'71년 「10만 부모찾아주기 운동」 전개, 7,293건 소개, 374건 상봉, '74.1.5-'76.3.22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전개(3,510명 소개, 164건 상봉)
한국방송공사· 대한적십자사	'73.10.27-'83.6.30 라디오를 통해 「국내외 이산가족찾기 운동」 전개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79년부터 공산권 거주동포의 가족찾기 방송중

단 체 명	주 요 활 동
서울신문	'80.2.9-현재 KBS와 공동으로 「공산권동포 혈연찾기」 전개
한국방송공사 (TV·라디오)	'83.6.30-11.14간 TV를 통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전개하 여 100, 952건 접수, 53,536건 소개, 10,189건 재회
KBS(라디오) 사회교육방송국	북방동포 이산가족찾기사업 계속 추진
문화방송 서울방송 한국방송공사	'98.6.22~25 기간중 「남북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 '98.6.15~17 「분단 50년, 혈육을 찾습니다」 특집생방송 '99.6.12, 6.24 「남과북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특집생방송

아울러 남북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가족재회 사업을 주도하기 위
해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설립('82.12.30)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등 22개 이산가족 관련단체가 「남북이
산가족교류협의회」를 구성('98. 5.28)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직·간
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비정부기구(NGO)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남북이산가족재회촉구 범
세계서명운동」을 1993년부터 전개, 153개국에서 역대 노벨상 수상
자 32명을 포함한 21,202,192명이 서명한 명부를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적십자사에 전달하여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킨 바 있다.

또한 국제적 이산가족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각종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학술논문 발표 및 게재를 통해 남북이산가족의 실
상을 내외에 알리고,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유엔인권기구 등에 직
접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1997년 8월 제49차 「UN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당국에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보장 등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제 3 장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절차 안내

1.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2.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1.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6·15 남북공동선언」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결과로 1985년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가 재개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절차

상봉 등 교류를 원하는 이산가족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설치된 이북5도위 시·도 사무소와 민주평통 시·군·구 협의회, 혹은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시·도지사 등 전국 264개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하여 사진을 부착한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수 있다(reunion.unikorea.go.kr).

각 민원 창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한적 본사에 송부하며, 한적 본사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여 영구보존하며,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 대상자 선정시 대상자료로 사용된다.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사회각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위원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선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인선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남북관계 총재특별보좌역을 위원장으로 이산가족관련 단체, 학계·언론계·여성계·법조계 인사와 정부관계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위적 인선에서 야기될 수 있는 투명성·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 추첨 방식으

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1차 후보자로서 연령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고령자, 직계가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300명을 선발한 다음, 1차 후보자중 본인의 희망여부, 신체검사 결과 등을 감안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북한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하게 된다. 북한측에서 확인작업을 거쳐 생사확인 결과를 통보해 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계가족, 고령자를 우선하여 최종 방문자를 확정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까지 접수된 11만여명의 신청자중 80세 이상 신청자는 2만여명, 직계가족을 찾는 경우가 3만여명에 이른다.

나. 생사·주소확인자 등 선정 절차

생사·주소확인자 명단 선정절차는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절차의 경우를 준용하며 선정기준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적용한다. 서신교환 및 면회소 상봉 대상자는 이미 생사확인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인선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2.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가. 재북가족과의 접촉

(1) 접촉의 개념 및 대상범위

재북가족과 민간차원의 경로를 통하여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재북가족과 직접 상봉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방송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북한주민의 범위에는 북한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법인, 단체 포함)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남한주민에는 법인을 포함하고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할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전원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촉은 제3국을 통한 접촉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간의 직접접촉이나 휴전선지역에서의 가족상봉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제3국을 통한 접촉과 관계된 사항을 주로 기술하나 직접접촉에 적용될 수도 있다.

(2) 남북이산가족 접촉 절차

① 북한주민접촉 신청절차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15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뒷면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 필히 기재)를 기재, 사진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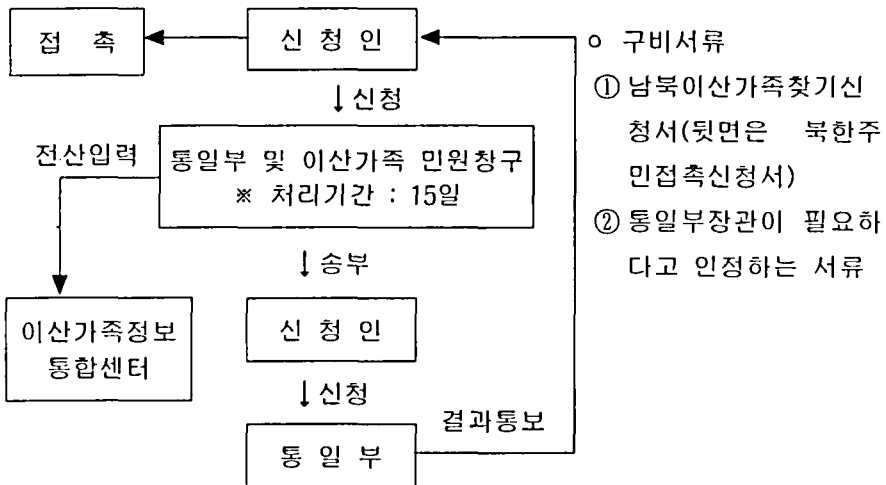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정부중앙청사(통일부 이산가족과)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좋지만, 지방거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접수 창구를 지방에도 확대실시중인 바, 시·도의

이북5도사무소나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지사 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시·군·구 협의회(시·군·구청내에 사무실 소재) 등 264개소의 지방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이며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지된다. 통지문에는 피접촉인, 접촉목적, 승인유효기간 등이 명시된다.

접촉승인서는 재북가족과의 통신교류 및 제3국에서의 상봉을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방북을 위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접촉승인의 경우 접촉장소에는 북한지역이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대사관 등에 출입하는 것까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판문점 등의 특수지역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북한주민접촉신청 처리절차 >



② 접촉 결과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등 이산가족교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접촉 결과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촉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재북가족 접촉자는 접촉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이산가족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접촉결과보고는 긴급시는 구두로 한 후라도 서면보고가 필요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서식은 승인문서와 함께 우송되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서신과 사진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③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현재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간내에 재북가족과 접촉을 하지 못하거나 접촉이 진행되는 과정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신청하여 승인기간 연장 후 진행하면 된다.

재승인 신청시에는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승인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를 벗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접촉대상자나 신

청자의 승계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역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후신고

이산가족이 재북가족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밟아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당해 건에 한하여 접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지속적 접촉을 하고자 할 경우 접촉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마련되어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남북이산가족 교류·접촉의 방법

남북이산가족이 교류·접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한적십자사의 주선으로 한반도내에서 교류·접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까지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이산가족교류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교류·접촉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북한이 남한가족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인이 북한주민과 연락을 통해 주소·생사확인을 하거나, 제3국인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탐문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3국인인 친척이 재북가족을 초청

하는 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게 되며, 주로 중국 조선족의 중개를 통해 상봉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3국에서의 가족상봉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재북 가족이 정식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나오는 경우 신변상의 불이익 등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고 있다.

나. 남북한 왕래

(1) 남북한 왕래의 개념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판문점 등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는 대신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체류 중에 북한방문이 필요한 때는 통일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련계 동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2) 남북한 왕래 절차

① 북한방문 절차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한다. 신청서류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이산가족찾기신청서(뒷면 북한주민접촉신청서 기재), 사진 4매, 방북계획서, 북한방문기간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초청장) 등이며, 초청장에는 초청대상자, 초청목적 및 기간, 초청인의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 된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이다.

㉡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기본적으로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기간에 따라 적정 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1년 6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최초 승인된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 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그 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㉞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방문자는 방북전에 반드시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안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북 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㉟ 출입심사

남한의 출입장소에서 직접 북한을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소정의 출입심사가 이루어진다. 방북자는 출입심사공무원에게 <방문증명서>,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 고시)에 따라 반출·반입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허용되는 품목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북한 왕래시 이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 반출 및 반입 금지 품목〉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는 다음의 물품을 휴대품으로 남한지역에 반입하거나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통일부 고시 제 90-1호)

(반입금지품)

-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화폐, 수표, 어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③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
- ④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⑤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반출금지품)

- ①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②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③ COCOM 수출 규제품목
- ④ 보호문화재 등
- ⑤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 ⑥ 통일부 고시에 의하여 반입 금지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사전 허가를 요하는 물품)

- ①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② 검역대상 물품
- ③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㉟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및 결과보고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반납하며,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후 즉시 통일부에 반납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도 있다.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서식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북한방문결과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귀환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 방문결과보고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㊱ 신청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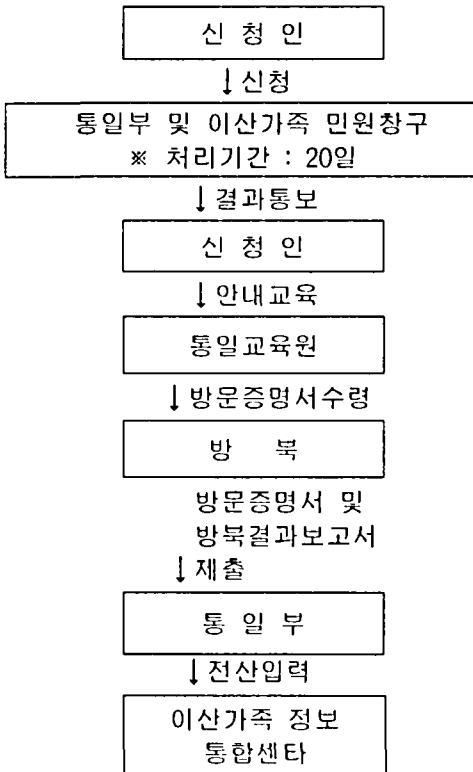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가족상봉·고향방문 등 순수한 이산가족교류를 위해 방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2000.3.2 「이산가족교류촉

진지원계획」을 발표, 시행하여 모든 이산가족들에 대해서 방북신고대상자로 규정하고, 요건을 갖추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방문증명서 발급여부에 대한 내용심사를 생략하고, 요건심사만을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 북한방문신청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① 방문증발급신청서
 - ②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
 - ③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 ④ 병역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⑥ 방북계획서

②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 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므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신청서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설명을 대신한다.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의 구비서류(대리신청서류 포함)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항, 제11조(대리신청)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다.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다. 재외국민의 이산가족교류절차

(1) 재외국민의 범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을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이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법률적용을 받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등이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라도 유학생, 교환교수 등과 같은 단기 체류자는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외국민으로서 사전신고만으로 북한방문이 가능하다.

(2) 재외국민의 이산가족 교류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허가·신고 등의 규제절차는 없으며, 접촉의 범위는 북한가족과의 상봉, 서신교환 전화 FAX, 기타 통신에 의한 일체의 의사 교환행위가 포함된다.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이내에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는 여권 및 북한비자, 북한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는 초청장, 기타 방북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재외공관장은 신고 접수 후 관련서류를 통일부로 송부하게된다.

(4) 이산가족 교류주선의 경우

이산가족이 아닌 재외국민(법인, 단체포함, 이하 교류주선자로 표기)이 타인의 이산가족교류를 주선할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접촉, 왕래의 절차는 일반 재외국민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

(1) 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의 개념

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필요시 제3국 중개자 포함)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산가족찾기나 상봉주선 활동을 함에 있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북한주민(기관, 단체포함)과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다수인을 조직적·계속적·공개적 방법으로 모집,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신교류나 가족상봉은 물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조사·연구 및 학술문화행사를 추진하거나, 비디오나 방송에 의한 영상재회, 전화,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재회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2) 협력사업 추진절차

① 협력사업자 승인절차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방북절차를 거쳐 북한측 상대방과의 합

의가 필요한 이산가족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개인, 단체의 경험, 전문성 등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이산가족교류 주선 및 이산가족찾기 운동이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류는 승인신청서, 협력사업설명서, 북한측 당사자와의 의향서 사본, 사업실적,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이 있어야 된다. 협력사업자 승인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받게 된다.

② 협력사업 승인절차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매 사업마다 북한측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승인은 실현가능성,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의 부합여부, 타 협력사업과의 경합여부, 남북간 당국간 또는 적십자간에 기 합의된 사항과의 관계, 국가안전보장 및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남북한간의 분쟁 유발 가능성, 재북가족 등 재회 대상자와 사업관련자의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하게 된다.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는 협력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 소개서, 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현지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재북가족·친척 고용시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족보 등)등이며 사업계획서에는 추진경위, 사업내용, 추진 계획, 추진방법,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계약유형, 계약이행방법, 기대효과, 성사자 및 미성사자에 대한 대책 등을 기재하게 된다.

상대자와의 협의서에는 별도기구 구성시 소재지 및 임원, 사업 목적, 가족재회 방법, 비용지불 방법, 신변안전보장 방법, 분쟁해결 방법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북한당국의 확인서에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내용이행 보장과 협력사업 관련자 및 재북 이산가족의 신변안전 보장과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협력사업자 보고

협력사업 신청후 30일내에 결과 통보서가 발급된 후 당해 사업자는 북한측 상대자와의 계약, 사업착수, 사업진행, 사업완료 또는 계약해지, 분쟁 및 사고발생 등의 사유발생시 20일내에 통일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마.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1)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이란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하여 교류를 중개하게 되는데, 이산가족교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단체의 경우는 교류주선에 참여하는 기획 및 사업추진 관련자 전원이

승인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교역 등 다른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자도 이산가족 교류주선을 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신청시에는 교류주선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접촉목적, 추진경위, 수행방식, 활동지역, 자금조달 및 수수료 부담 계획, 의뢰인 모집방법,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산가족교류 주선은 비영리 활동으로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의뢰자의 신상자료 취급유의 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또한 교류주선사업이 북한측(제3국인 포함)과의 계약에 의해 조직적·공개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앞장에 기술된 교류협력사업으로 처리되어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2)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지원

남북이산가족은 민족적 수난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이산가족의 재회와 재결합은 바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비에 의한 교류와 왕래가 어려운 사람들은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령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이산가족교류를 하는 남한 주민중 ①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경우, ② 재북가족을 상봉한 경우 중 재산·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서신교환 등으로 교류가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법령에 의거 지원받을 수 있는 경비는 숙식비, 교통비 등 소요된 경비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 교류지속 40만원이며 각 경우 1회에 한정한다.(남북자 가족, 국군포로가족,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70세 이상의 경로연금 수령자 등의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함)

이산가족교류경비를 지원 받으려면 전국 264개 이산가족민원창구에 교류가 성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신청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접수·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화로 지급한다.

바. 관련부서 및 지방접수기관 등 연락처

- (1) 이산가족 북한주민 접촉신청 접수창구
 - 통일부 인도지원국 이산가족2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세종로청사 410호
 - 전 화 : (02) 732-7950
 - F A X : (02) 3703-2394
 -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도 지사
 - 이북5도위원회 본부 및 각 시·도 사무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 234개 시·군·구 협의회
 - 소 재 지 : 전국 시·군·구청내

- 전화번호 : 전국 시·군·구청 교환

* 자세한 사항은 부록 IV참조

사. 북한주민접촉시 유의사항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북한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북가족과의 교류사실이 주변, 특히 북한당국에 노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북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적십자 등을 통한 직접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제3국을 통해 재북가족과 교류해오던 사실을 북한당국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제3국을 통해 교류가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중개인의 신중한 선정과 신뢰관계의 유지가 요청된다. 재북가족과의 접촉은 재북가족의 생사 및 소재 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데, 이를 구분해서 교류시 유념할 사항을 살펴본다.

(1) 생사 및 주소확인의 경우

- ① 재북가족을 찾는데 필요한 내용 이외에 의뢰자의 자세한 신상 자료를 중개인이나 북한측에 넘겨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현지에서는 많은 중개인이 접근해 올 수 있는데, 조금하게 서두르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중개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정후에는 인간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찾는 사람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는 중개인에게 알리지 말고, 중개인이 받아온 정보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2) 서신교환의 경우

- ① 제3국을 통한 교류에는 북한 당국의 검열에 대비해 편지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발신자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표는 물론이고 편지지나 봉투에 한글이 없는 중개지역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편지 내용 구성시 국내상황 서술보다는 가족간 안부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너무 빈번한 서신왕래는 북한당국의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하여 재북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재북가족으로부터 편지나 답장을 독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재북가족이 생계와 무관하게 거액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면 오히려 재북가족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과도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3) 상봉하는 경우

- ① 상봉을 하려면 제3국인의 초청 동의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신교류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초청장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나와 상봉이 성사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5%이내)이다. 현재 북한은 61세 이상은 초청에 의한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 ② 재북가족과의 만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북가족이 제3국인 초청에 의한 북한 당국의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없이 월경시는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여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남한가족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시 유의해야 한다.
- ③ 중개인이 외환관리규정상의 사용가능 금액을 초과해서 사례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많은 주선사례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여 오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사전에 합의된 적정한 사례비는 성사후에 차질 없이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④ 상봉시 재북가족에게 많은 돈을 건네주는 것도 역시 해당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여행경비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조절해야 한다.
- ⑤ 재북가족이 북한이탈을 희망해 올 경우, 잔류가족에게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탈북 자체도 많은 위험이 초래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 ⑥ 재북가족과는 가족안부, 세시풍속, 일반적인 신변잡기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북가족과 만나는 가운데 북한측의 기관원과도 상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히 언행에 주의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국가 기밀사항이 넘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⑦ 북한의 요원은 때로는 이산가족교류를 대남 공작에 이용하

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며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 ⑧ 재북가족과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는 특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바, 출국전 반드시 통일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 ⑨ 방북 상봉의 경우 북한의 전지역에서 감시와 도청이 되고 있다고 보아,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체제비방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등을 삼가는 것이 좋다.

(4) 결과보고서 제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매 접촉후 10일이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는 우편 및 FAX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서신(사진)교환 : 서신(사진)내용 사본 및 편지봉투 사본
 - 통신(전화 등) : 주요내용을 요약
 - 상봉 및 기타 : 상봉 및 기타접촉 내용 기록

부 록

- I. 남북이산가족 관련 법령
- II. 남북이산가족 관련 남북한 합의 문건
- III. 남북이산가족 관련 주요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내용
- IV. 이산가족 관련 단체현황
- V. 이산가족찾기신청 등 관련 서식

I. 남북이산가족 관련 법령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4. 이산 1세대 등에 대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
5. 남북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왕태 절차에 관한 특례
6.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지침
7.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운영지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

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

공사·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부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12. 6	대통령령	제14819호(병역법시행령)
	19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우편법시행령)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 · 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 4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대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 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 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 제>

제 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 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의 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 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삭 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

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 · 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 · 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 · 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

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

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 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특례

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생 략 >

3.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00. 9. 9

통일부장관 박재규

<붙임 2> -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특별지원대상자"라 함은 남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특별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생사 확인, 상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류경비를 지급한다.

1. 생사확인 경비 :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
2. 상봉 경비 :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이나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산가족이 재상봉을 한 경우로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류지속 경비 : 교류가 지속되는 이산가족

제4조(지원금액) 경비지원은 실제로 소요된 경비 범위내에서 하 되,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사확인 경비 : 80만원
2. 상봉 경비 : 180만원
3. 교류지속 경비 : 40만원

제5조(경비지원 신청) 이산가족은 교류가 이루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경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 상봉지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원적이 표시된 호적등본 또는 가호적 신고자료,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 증명서
3.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생사확인과 상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즉, 편지·편지봉투·사진 및 여권사본 등

제6조(경비지원 심사 및 결정) ① 생사확인 및 교류지속 경비 지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상봉 경비 지원은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상봉경비 지원요건 심사 등을 위해 통일부에 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대책본부장, 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 사무국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및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7조(경비 지급) ① 경비의 지급은 1가족 단위로 생사확인 경비·상봉 경비 및 교류지속 경비를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생사확인과 상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봉 경비만을 지급한다.

② 경비 지급은 교류성사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고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관련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생사확인 및 상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경비를 지급한다.
3. 2000.3.1 이전에 생사확인만 이루어진 이산가족이 2000.3.2 이후 서신교환 또는 상봉을 하게되는 경우, 각1회에 한하여 교류지속 경비 또는 상봉경비를 지급한다.
4. 2000.3.1 이전에 상봉을 한 이산가족이 2000.3.2 이후 서신교환을 하게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류지속 경비를 지급한다.

<부 칙>

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이산 1세대 등에 대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

1998· 8· 25 통일부훈령제289호
개정 1999· 7· 7 통일부훈령 제298호
전문개정 2000· 3· 2 통일부훈령 제30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산1세대 등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이산1세대"라 함은 이산가족 중 1953.7.27(휴전)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지역에서 남북(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을 말한다.
3. "실향민"이라 함은 1953.7.27(휴전)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남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산1세대 및 실향민
2. 방북조력자 : 제1호의 방북을 돕기 위하여 동행 방북하고자 하는 가족
3. 긴급 가사 방북자 : 재북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병환중인 경우

및 기타 가사사정으로 인한 긴급한 방북사유
가 있는 자

4.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자 :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등의 목적으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산가족 및 실향민

제4조(요건) 이 지침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등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을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북한측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초청장 등)를 받은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 ① 이산1세대 등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이를 발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시 남북교류협력시행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결격사유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0·3·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남북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된 이산가족, 기자, 지원인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에 의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일행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중 신원진술서, 병역법상의 허가서는 면제한다. 신변안전보증서류는 북한에서 보내온 당국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음으로써 일행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①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북한주민이 직접 또는 남한측 초청자가 대리로 통일부장관에게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이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증명서 발급절차 등)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산가족인 남한주민이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에 적용한다.

제3조(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의 특례)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별지)를 제출한 남한주민이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접촉신청의 특례) 남한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및 신원진술서를 이산가족찾기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협의)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 접촉의 승인 또는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제출이 면제된 서류를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1999·8·23>

이 지침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라 함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및 이 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을 말한다.
2.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산가족찾기신청서 등을 기초로 구축된 이산가족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동 자료의 관리·활용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등록자료”라 함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이산가족신상자료 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센터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통일부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등록자료의 입력 및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북5도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 각각 설치한다.

② 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업무 총괄 기획·조정 및 관리·운영
2. 주관기관과 전담기관 센터간의 전산망 구축

- 3. 등록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4. 센터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③ 전담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자료의 입력, 대민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 2. 자체 센터의 관리·운영 및 시스템의 전산망 구축·운영
- 3. 자체 센터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④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센터관리자는 부서의 책임자급에서 정책임자를, 실무담당자중에서 부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구·조직의 변경 및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센터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이용자 관리) ① 시스템 이용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은 이용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계정의 발급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계정(ID)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계정(ID)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신청 및 입력) ① 이산가족찾기신청서류는 전담

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센터서버장비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서류의 등록은 전담기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관련업무는 대한적십자사가 총괄한다.

③ 등록자료의 효력 인정범위는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입력된 자료와 기존의 이산가족찾기신청서 및 이북도민자료 등으로 한다.

④ 주관기관에서는 이산가족 등록 및 교류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자료의 관리) ① 등록자료의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총괄한다.

② 이산가족찾기신청서 원본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관·관리하고, 이북도민명부자료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보관·관리한다.

③ 주관기관은 등록자료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 자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자료의 이용) ①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찾기 신청인과 그 가족이 등록자료를 이용 또는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산가족찾기 신청인 및 그 가족이외의 자가 이산가족교류 목적 등으로 등록자료를 이용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6호서식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산가족이 인터넷상의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은 검색결과를 전화, 모사전송(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8조(행정협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이산가족찾기 등 센터 업무의 추진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 및 보안) ①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 장비 및 관련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복구대책 등 사고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간의 전산망은 전용회선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전산망구축에 필요한 장비제원, 접속방식, 통신프로토콜 등 전산망 관련 제반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 관리자는 등록자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의 전산자료 관리를 위해 전산보안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하며, 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서버장비·통신장비 등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센터를 제한구역 이상으로 설정하고 비인가자

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국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실무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안전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을 채택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간 대상업무의 추가·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준용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한다.
- ③ (세부지침 수립) 각 기관은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II. 남북이산가족 관련 남북간 합의문건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2.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의 이행과 존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3. 6.15 남북공동선언
4. 1~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및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 보도문
5. 1~4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 북 교류 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

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
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2.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증과 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 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

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 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 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 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 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 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 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 · 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3. 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4. 1~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및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 보도문

(1)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0.6.30)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 초에 송환한다.
-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 받은 다음 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기륜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승철

(2)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0.9.23)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
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
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
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
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
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
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
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 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
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등을 포함한다.

3. 서신 교환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한다.
-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6. 합의서 발표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박기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최승철

(3)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1.1.31)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동시에 교환한다.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한다.

2.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3.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

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31일
금강산

5. 1~4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

(1)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2000.7.31)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 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 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 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 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부터 8월 31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울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 양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9.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 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종과제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

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주도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회의를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한다.

6.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판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 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양

Ⅲ. 남북이산가족관련 회담 개최상황 및 주요 합의내용

1. 적십자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2.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4.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발효('92.9.17) 이후 관련
대북제의 현황

1. 적십자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1) 개최상황

구 분	기 간	장 소	예비회담 및 기타접촉
제1차	72. 8.29~ 9. 2	평 양	○ 예비회담 25회(71. 9.20~72. 8.11)
제2차	72. 9.12~ 9.16	서 울	
제3차	72.10.23~10.26	평 양	
제4차	72.11.22~11.24	서 울	
제5차	73. 3.20~ 3.23	평 양	
제6차	73. 5. 8~ 5.11	서 울	
제7차	73. 7.10~ 7.13	평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회의 7회(73.11.28~74. 5.29) ○ 실무회의 25회(74. 7.10~77.12. 9) ○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 실무접촉 ('84.9) ○ 제8차 본회담개최를 위한 예비접촉 1회 ('84.11.20)
제8차	85. 5.27~ 5.30	서 울	
제9차	85. 8.26~ 8.29	평 양	○ 실무대표접촉 3회(85.7.15~85.8.23)
제10차	85.12. 2~12. 5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86.2.26)하기로 합의 ○ 실무대표접촉 8회(89.9.27~90.11.8) ※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및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8차례 가졌으나 11차 본회담 개최 실패

구분	기간	장소	예비회담 및 기타접촉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88.9.27~90.11.8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관련 실무대표 접촉 8회 ※ 혁명가극 '피바다', '꽃피는 처녀' 등의 공연을 요구하는 북측입장 고수로 성과없이 종결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92. 6. 5~ 8. 7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0~12.13)에서 1992년 8.15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합의함에 따라 실무대표 접촉 8회 개최 ※ 이인모 송환, 핵문제, 한미군사훈련 등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북측의 입장 견지로 성과없이 중단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97.5.3~98.3.27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북측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북한식량사정의 지속적 악화에 따라 효율적 대북지원을 위해 개최 제의하여 5차례 접촉 ○ 대북 수재물자 종류, 수량, 인도방법 등 합의
제1차남북적십자회담	2000.6.27~30	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절차 합의를 위해 열렸으며, 8월15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북송희망비전향장기수 전원을 9월초에 송환하는데 합의
제2차남북적십자회담	2000.9.20~23	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제2차 및 제3차)과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일자 및 절차에 합의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할 것과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일정에 합의

구 분	기 간	장 소	예비회담 및 기타접촉
제3차남북적 십자회담	2001.1.29~31	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일자를 확정(2001.2.26~28)하고,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의 서신교환일자(3.15) 및 교환장소를 판문점으로 확정 ○ 제2차 생사확인자 명단 교환(2001.2.9) 및 결과통보 일자(2001.2.23) 확정 ○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의 규모확대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 사항 및 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합의

(2) 주요 합의내용

일 자	합 의 내 용
72. 6.16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 본 회담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72. 7.10 남북적십자 제21차 예비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회담은 쌍방 대표단을 각각 7명의 대표로 함

154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일 자	합 의 내 용
72. 8.29~9. 2 제1차 본 회담(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5개항의 확인·채택 ○ 7·4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 인도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가족의 생사를 덜어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
72. 9.12~16 제2차 본 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로 설정된 문제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 ○ 제3차 회담부터는 의제토의 진행 등
72.11.22~24 제4차 본 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사항 실행 위해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 동기구의 기능·운영절차, 구성 등은 따로 토의 결정
74. 5.22 제8차 본회담위한 6차 대표회담(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서 채택
74. 5.29 남북적십자 제7차 대표회의(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회의 일자·구성·운영절차 합의 등
84. 9.18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절차 협의
84. 9.29~10. 4 수재물자 인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적십자사측이 보내는 물자를 대한적십자사측이 인수함(판문점·인천항·북평항에서 수재물자 인수).
84.11.20 제8차 본회담 개최 를 위한 예비접촉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담 의제문제·장소·대표단 구성·상설 연락 사무소 운영·운영절차 등 ○ 본회담 의제문제는 72. 6.16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기 합의한 5개항
85. 5.27~30 제8차 본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5개항 일괄적 토의 ○ 85. 8.15를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절차합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개최 방안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27 평양에서 개최

일 자	합 의 내 용
85. 8.22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규모 : 1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1명,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 방문기간 : 9월20일~9월23일(3박4일) ○ 방문방법 : 동시교환 방문 ○ 방 문 지 : 서울·평양 ○ 공연회수 : 각2회
85.12. 2~5 제10차 본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86. 2.26 평양개최
89.10.16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교환일자(89.12. 8) 및 본 회담 개최일자 (89.12.15)
89.11.21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고향방문단 350명, 예술공연단 1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40명, 인솔자 1명 (총 571명) - 북 측 :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200명, 취재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자 1명 (총 571명) * 총 571명 범위내에서 고향단, 예술단 규모를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 공연내용 원칙 : 민족적인 내용, 건전한 내용,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 내용 등 「3개원칙」 *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판문점)시 북측의 「혁명가극」 공연주장으로 고향방문단 교환무산

일 자	합 의 내 용
<p>92. 6.12 이산가족 노부모방문 단 및 예술단 교환방 문을 위한 제2차 실 무대표 접촉(관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인솔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쌍방 적십자사 부총재(부위원장) - 북 측 : 쌍방 적십자사 부위원장 「금」 ○ 방문단·사전답사반 교환시기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답사반 : 1992. 8.16~8.18(2박3일) - 방문단 : 1992. 8.25~28(3박4일) ○ 공연내용 원칙 : 편의대로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 북 측 :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예술단 공연은 TV·라디오로 실황중계 <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무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제9차 접촉일자를 이미 쌍방이 합의한 방문단 교환실시 기간중(8.25~28)으로 제의한데 대해 우리측은 북측이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을 철회할 때 직통전화를 통해 연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차기접촉 일자에 합의를 못 본체 접촉 종료
<p>97. 5.26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2차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대홍수에 따른 식량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옥수수 10만톤을 신의주·남포항 등 4개항에 전달하며 인도요원의 신변안전, 안전운행보장 등 인도 인수관련 절차에 대해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물자에 적십자 표지와 지원단체 표지 등 부착 합의

일 자	합 의 내 용
98. 3.27 대북구호물자 전달 을 위한 남북적십 자대표 접촉 제5 차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적은 식량 10만톤의 추가지원과 비료 20만톤 지 원을 새로 요구하여, 비료지원은 당국간 협의에 의하 기로 하고 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합의 ※ 규모 및 절차는 1·2차의 경우와 같음
2000.6.30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방문단교환(양측 각 100명) - 2000.8.15~18(서울 및 평양) -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 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 ○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 비전향장기수 송환후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 사항 협 의·확정 ○ 비전향장기수 송환(2000.9월초) -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송환
2000.9.23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및 제3차 방문단 동시교환 일자 확정 - 제2차 : 2000.11.2~4 - 제3차 : 2000.12.5~7 ○ 생사·주소확인 규모 및 절차확정 - 9월 100명, 10월 100명 ○ 서신교환 합의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의 서신을 교환하고, 그 규 모를 확대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에서 협의확정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확정
2001.1.31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일자(2001.2.26~28) 확정 - 규모 및 교환절차는 1·2차와 동일 ○ 서신교환일자(2001.3.15) 확정 ○ 제2차 생사·주소확인자명단 교환일자(2001.2.9) 및 결과 통보일자(2001.2.23) 확정 ○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확대문제와 면회소 설치 관련 구체적 문제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서 협의·확정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일자(2001.4.3~5)확정, 장소는 추후협의 하기로 합의

2.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1) 개최상황

구분	기간	장소	예비회담 및 기타접촉
제1차	90. 9. 4~ 9. 7	서울	
제2차	90.10.16~10.19	평양	
제3차	90.12.11~12.14	서울	
제4차	91.10.22~10.25	평양	
제5차	91.12.10~12.13	서울	
제6차	92. 2.18~ 2.21	평양	
제7차	92. 5. 5~ 5. 8	서울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8회(92. 6. 5~92. 8. 7)
제8차	92. 9.14~ 9.18	평양	

2) 주요 합의내용

일자	합의내용
91.10.22~10.25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 채택 ○ 합의서 명칭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합의서 내용 구성 :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일 자	합 의 내 용
91.12.10~12.13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1991.12.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함. ○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함.
92. 5. 5~5. 8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이행기구 구성 합의 ○ 「불가침」,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합의 ○ 금년 8.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 실시를 적십자단체에 위임 등
92. 9.14~ 9.18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상황과 주요합의

(1) 개최상황

구분	기간	장소	예비회담 및 기타접촉
남북정상회담	2000.6.13~15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대통령의 베를린선언(3.9)이후 북측이 우리측에 특사접촉을 제외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중국 상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을 특사로 하여 비공개특사 접촉(2000.3.17, 3.23,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4.8 남북정상회담개최에 최종합의 ○ 2000.6.13~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4 북측 백화원 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 진행, 6.15 새벽 0시 조금지나 최종 합의문을 남북공동선언으로 내외에 발표
남북장관급회담	2000.7.29~31(1차) 2000.8.29~9.1(2차) 2000.9.27~30(3차) 2000.12.12~16(4차)	서울(1차) 평양(2차,4차) 제주도(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재반문제 협의를 위해 우리측이 북측에 제안하고 북측이 수락하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 ○ 남측대표 박재규통일부장관과 북측대표 전금진 내각책임참사간에 회담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회담은 2000.7.29~31, 2차 회담은 2000.8.29~9.1, 3차 2000.9.27~30, 4차 2000.12.12~16 기간동안 개최

(2) 주요 합의내용

일 자	합 의 내 용
2000.6.15 남북 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은 통일문제를 남북간 협력하에 자주적으로 해결 ○ 남측의 연합제 통일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동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해결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당국간 대화개최를 합의 ○ 그외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제의하였고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것을 약속
2000.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장관급회담을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존중과 공동이익 추구 방향의 대화 -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 -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 ○ 200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2000년 8·15에 즈음, 남과북, 해외에서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행사 개최 ○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및 적절한 관련 조치 ○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및 빠른 시일내 관련문제 협의 ○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000.9.1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문제는 남북직접자회담에서 협의 -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도 협의 ○ 남과 북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시일내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 남북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중 실무접촉 개최 * 차관형태의 식량 제공문제 검토 추진 ○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중 개최하여 착공식 문제 등 협의 ○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단 규모는 각기 100명 정도로 하며 9월중~10월초 실시 ○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00.9.27~30, 한라산 - 대표단 규모 :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

162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일 자	합 의 내 용
2000.9.30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 ○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정파와 청산결제 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교환 문제 등 교류·협력 문제를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 ○ 제4차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 장소는 추후 협의
2000.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12.26경 평양에서 1차회의 개최 - 전력협력,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협의 ○ 어업부문 상호협력 : 북측이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관계자 접촉(빠른 시일 내, 금강산) ○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 이산가족 생사확인(2001년 1·2월, 각 100명), 서신교환(2001년 3월, 300명)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년 2월말, 100명) ○ 북측 한라산 관광단(2001년 3월), 경제 시찰단(2001년 상반기)파견 ○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측에 통보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1년 3월중 개최(장소 추후 협의)

4.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발효('92.9.17)후 관련 대북제의 현황

일 자	내 용
92. 9.25 남북고위급회담 이동복 대변인, 기자회견	○ 제8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인모 문제 해결을 위 해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함 -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92.10. 1 및 10.5 남북고위급회담, 쌍방 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 및 평화의 집))	○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의 정례화, 판문점 이산가 족면회소 설치, 남북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및 이인모 송환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
92.10.21 남북고위급회담 수석 대표 현승중 국무총리, 대북서한	○ 핵·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해결, 일체의 비방·중 상행위의 즉각 중지를 재촉구함
92.10.29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통지문	○ 이산가족문제 실천 협의 위한 제11차 적십자 본회 담 개최 제의
92.11. 2 남북고위급회담 수석 대표 현승중 국무총리 대북전통문	○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준수 및 사리에 맞지 않 는 요구 즉각 철회 촉구
93. 3.11 이인모 방북허용 발표	○ 남북간 신뢰회복, 이산가족 문제해결, 핵문제 해 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를 기대함
93. 3.19 이인모 입북	○ 오전 11시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통해 입북
93. 3.26 - 29 한완상 부총리, 이산가족 교류-핵문제 비연계 입장 표명	○ 이산가족교류 등 인도주의 영역은 핵문제와 비 연계 추진 및 판문점 면회소 설치 표명

164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일 자	내 용
93. 4. 2 한완상 부총리 기자회견	○ UN의 대북 제재결의시 남북경협 중단의사 표명하며, 핵문제 해결전이라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하여는 대화를 가질 수 있음
93. 5.12 김영삼 대통령, 대북 성명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어떤 명분으로도 연기시키거나 거부해서는 안될 것임
93. 8.15 김영삼 대통령,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및 이산가족의 아픔해소에 호응 촉구
93. 8.20 한완상 부총리, 이산 가족 제3국 상봉추진 의사표명	○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 설치 위한 노력을 다하겠음. 판문점이 안된다면 중국 등 제3국 상봉 지원문제 검토할 것
93. 9.22 한완상 부총리, 제12회 이산가족의날 격려사	○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실천,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제3국 상봉이라도 추진해야 함
93.10.25 김영삼 대통령, 제165차 정기국회 연설	○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판문점 설치를 비롯하여 제3국 상봉과 서신교환 추진 노력할 것
93.12. 3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전통문	○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
94. 1. 5 이영덕 부총리, 기자 회견	○ 이산가족문제 우선해결 대북 촉구
94. 1.20 통일원 대변인, 논평	○ 이산가족문제 등 쌍방주인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
94. 4.22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전통문	○ 북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440여명의 남북된 우리측 인사들을 하루속히 송환하며,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

일 자	내 용
94. 5. 9 강영훈 「한적」 총재,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	○ 1992. 5 기합의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적십자회담 또한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94. 8. 9 국회외무통일위원회, 대북결의문 채택	○ 북한은 이산가족재회와 억류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위해 남북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해야 함.
94. 8.12 강영훈 「한적」 총재 성명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기합의한 노부모 방문단은 지체없이 교환되어야 함.
94. 8.15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49주년 경축사	○ 이산가족문제는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임.
94. 9.14 이흥구 부총리, 제13회 이산가족의날 격려사	○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등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
95. 2. 3 김덕 부총리, 대북성명	○ 이산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물자 등 교환방안을 쌍방이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
95. 5.15 김영삼 대통령, 국제 언론인협회 제44차총회 연설	○ 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
95. 8.12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성명	○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안부소식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함
95. 9.28 공로명 외무부장관, 제50차 유엔총회연설	○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때까지 서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96. 8.12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성명	○ 이산가족문제 등 시급한 과제 협의 위한 쌍방 적십자 단체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

166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일 자	내 용
96. 9. 2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전통문	○ 이산가족 재회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적십자단체 총재 또는 부총재 회담에 지체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96. 9.17 강영훈 「한적」 총재, 대북전통문	○ 북측의 출소공산주의자 송환요구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할 것을 제의
96.12.13 통일원 대변인,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관련 기본합의서 성실이행 촉구
97.10. 6 권오기 부총리, 제16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	○ 이산가족문제 해결 위한 회담재개 촉구
97.11. 8 정원식 「한적」 총재, 전화통지문	○ 남북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를 위한 남북 적십자 대표 접촉 제의
98. 2.25 김대중대통령 취임사 98. 3. 1 기념사 98. 8.15 경축사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
98.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북경)	○ 이산가족상봉면회소 설치를 적극 제의
2000. 3. 9 김대중대통령 베를린 선언	○ 정부차원의 남북경협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국간 대화를 촉구

IV. 남북이산가족관련 단체현황

1.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13개 시·도지사
2. 이북5도 14개 시·도사무소
3. 국내이산가족 교류추진단체(추선자)
4. 이산가족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1.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13개 시·도지사

구 분	소 재 지	전화번호
본 사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	02) 3705-3705
서울지사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3-1	02) 2290-6600
부산지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4동 6077-1	051) 818-4221
인천지사	인천시 남구 연수동 220	032) 815-5015
대구지사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0-8	053)256-6261
경기지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6	031) 238-1140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45	033) 255-9595
대전·충남지사	대전시 중구 선화3동 194-1	042) 254-7101
광주·전남지사	광주시 북구 엄동 226	062) 573-0541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문화동 15	043) 253-2651
경남지사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2가3-7	055) 263-6178
경북지사	대구시 중구 남산2동 257	053) 252-9845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1가 473-1	063) 284-2539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266-1	064) 758-3501

2. 이북5도 14개 시·도 사무소

구 분	소 재 지	전화번호
부 산	부산시 중구 창선동 1가 9-9, 통일회관 4층	061) 852-4017
인 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본관 4층	032) 439-4623
대 구	대구시 중구 태평로 2가 1, 시민회관 4층	053) 253-5806
대 전	대전시 중구 대흥1동 214	042) 222-7293
광 주	광주시 동구 계림1동 505-900, 광주시청내	062) 223-9468
경 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1, 경기도청내	031) 242-4927
강 원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강원도청 별관 6층	033) 255-2434
경 남	경남 창원시 사림1동, 경남도청 본관4층	055) 283-2659
경 북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3, 경북도청내	053) 602-5440
전 남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 전남도청 별관2층	062) 222-6574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1	063) 284-4916
충 북	충북 청주시 문화동 89	043) 252-2994
충 남	대전시 중구 선화1동 287	042) 253-5540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청 별관 2층	064) 743-2344

3. 국내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주선자)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 (FAX)
(사)겨레하나되기운동 연합	송낙환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추리타워 1412호	888-9797 F) 6278-9797
국군포로가족협의회	허태석	중구 봉래동 1가 7번지 우 남 B/D 906호	775-0625 F) 757-4415
기독교대한감리회한민 족통일선교회	주봉택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35-1 동수교회내	032) 528-1882 F 032) 338-1536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현대A 304-1407	031) 851-0534 F 031) 851-0534
남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37-19	041) 956-5465 F 041) 956-6883
대지통상	송치달	강서구 화곡본동 105-130	2608-7070 F) 2608-0354
버섯박물관	권종식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96-2	033) 637-5562 F 033) 636-5586
서울흥사단	김윤희	서대문구 연희1동 218-19 기리기 B/D 7층	3143-4181 F) 3143-4185
세계한민족통일협의회	전 암	인천시 남구 송의4동 6-46	032) 865-6116
연길이산가족소개소서 올사무소	김영엽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 3차오피스텔 1707	539-0882 F) 6242-0882

172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FAX)
예문기획	김훈기	송파구 송파동 32 경남레 이크 206호	412-5631~2 F) 412-5633
(사)21세기통일봉사단	박종근	용산구 한남동 737-28 안 성타워 7층	749-4707 F) 7494708
재마교역	최병우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 통상가 31-306	031) 917-4574 F) 807-4059
(사)중소이산가족회	이두훈	대구 중구 태평로 2가 1 시 민회관 5층	053) 254-2339 F 053) 252-2339
태백상사	김영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 사본 2동 55-1	032) 346-5808 F 032) 346-5808
한민족복지재단	전제현	서초구 반포4동 107-6 서 건 B/D 60	591-9841~5 F) 533-5733
한민족상조협의회	김귀덕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부 영Apt 309-902	031) 383-2323 F 031) 385-5566
한민족공동체	김성현	송파구 거여동 198-20	430-8564 F)448-5879
한조미래연구소	염유노	종로구 사직동 6-1 세일빌딩 4층	736-6080 F)735-6080
한중문화교류협의회	이용현	강서구 등촌2동 산23-24	651-4382 718-8218
효도회	장승학	강남구 역삼동 643-3 평 화빌딩 5층	511-8167 F) 3446-5437

4. 이산가족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통일부 이산가족1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02) 3703-3271~4
통일부 이산가족2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02) 732-7950
대한적십자사(본사)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02) 3705-3705
이북5도위원회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	02) 2287-2510~1
행정자치부 주민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02) 731-2294
KBS 사회교육방송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 '망향의 편지' 담당(북방동포 이산가족찾기)	02) 781-3641
5도신문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8호	02) 238-1520-4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 (남북교류과)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 남북이산가족심인, 남북교류지원	02) 3705-3641~4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서울 중구 신당동 377-143, 진빌딩301호	02)2232-5050
통일경모회	서울 용산구 동자동 5	02) 753-5625
동화연구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	02) 396-3682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	02) 396-383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23 (세기전자빌딩401호)	02) 777-3652-3

V.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 등 관련 서식

1. 이산가족찾기신청서
2. 북한주민 접촉 결과보고서
3.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4.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5. 북한방문신고서
6. 북한방문결과보고서
7.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 신청서
8. 이산가족상봉지원금 신청서
9.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 신청서

1.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 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명 (이명등)	사 진	
출신지(고향)	(우편번호 -)		본관			
현 주소	사무실: ()		E-mail:			
직업 (진직)	남한	연락처	자택: ()	형		인
출신 학교	남한	종교	철약형	기타		인
신청인의 신체특징 (헤어질 때 기준)	화상	점	장애	찾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		동산: 부동산:
	주요특징					재산
아버지	성명	출생년월일	성명	출생년월일	합머니	성명
아버지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남한가족사항	순번	성명	성별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1				-	
	2				-	
	3				-	
	4				-	
	5				-	

복합에 있는 가족(대상인)											
순번	성명	별명 (이명, 가명)	성별 (남/여)	관계	출생년월일	헤어질 당시 다녔던 학교	헤어질 당시 직	헤어질 당시 업	헤어질 당시 주소 (*원거주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주소 기재)		
1											
2											
3											
4											
5											
6											
7											
헤어질 시기	1. 6·25이후 2. 6·25당시 3. 휴전이후~1950 4. 195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년도										
이산사유 구분	실정인	국군포로	남북자	일부자	귀순동포	기	타	무기재			
기타 찾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											

2. 북한주민집축 신청서

※ 향후 제3국을 통하여 재북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 등 접촉을 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청합니다.

집축신청인(동행인) _____

집축일정 및 장소 _____

집 축 방 법 _____

집 축 경 령 _____

신청일자 _____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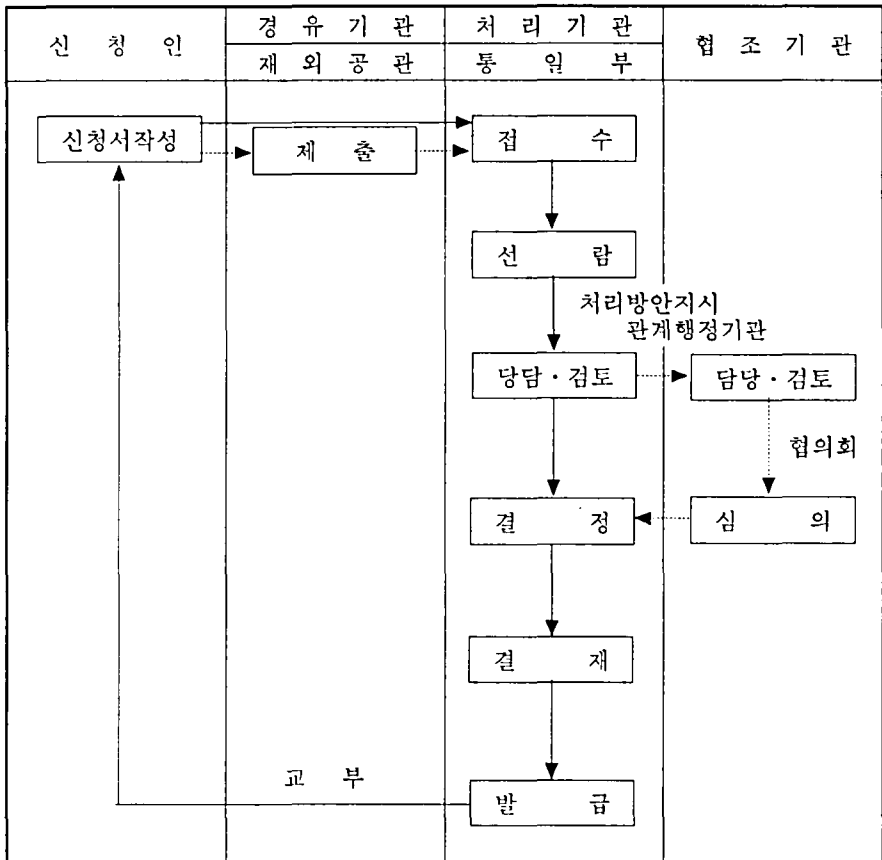
390mm×210mm(일반용지 180g/㎡)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① 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여권번호 :)				
	현 주 소	(전 화 :)				
	출 생 지					
	직 업	(전 화 :)				
② 피접촉인 인적사항 (상봉자 또는 서신발신자)	성 명	나 이	현 거 주 지	소 속 및 직 위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생 사 여 부
③ 생사확인 자 인적사항 (상봉시 또는 편지내용 등으로 확인된 가족)						
④ 집 촉 목 적						
⑤ 집 촉 일 시 및 장 소						
⑥ 집 촉 방 법						
⑦ 중 개 인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⑧ 소 요 경 비 내 역	총 소 요 경 비	주 선 사 례 비	가 족 지 원 액			
	물 품 지 원	여 비 · 숙 박 비	기 타 (통신비 등)			
⑨ 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⑩ 교 류 지 속 기 간	년	개 월	⑪ 연 간 교 류 회 수 (전화, 서신교환 등)	연 회 (평균)		
⑫ 접 촉 결 과 개 요 (특이사항)						
※ 세부내용 별지작성 및 편지 등 사본 첨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뒷면)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포함)
 3.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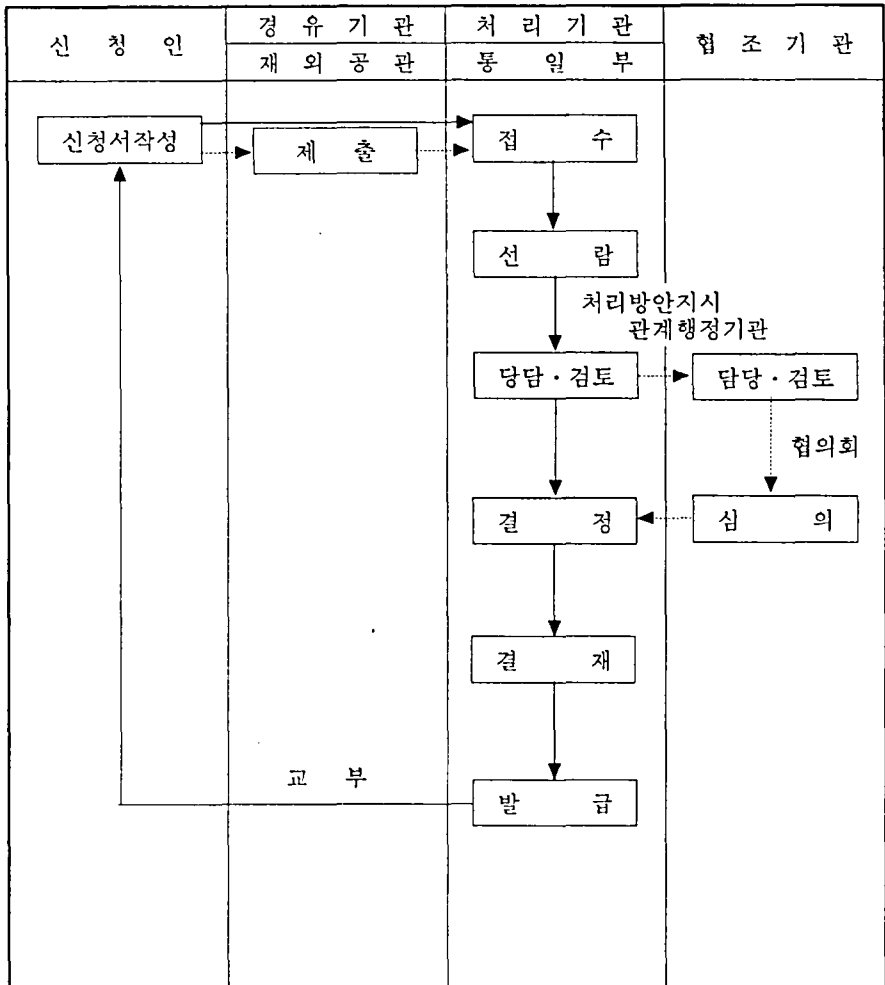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인사 사항	성명		(한자 :)			성별		남·여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						
	직업		소속		직위		(전화 :)					
② 동반 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진 2.5cm×3cm		사진 2.5cm×3cm	
							cm					
							cm					
③ 방문 대상자 인사 사항	성명		나이		관계			거주지				
④ 방문 목적												
⑤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⑥ 방문 예정일정 (일시, 방문지역)												
⑦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⑧ 방문 경험 (과거 3년 이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남한지역의 법질서와 안내에 따를 것이며,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뒷 면												
										년 월 일		
										신청인 : ㉠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뒷면)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포함)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진은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 사진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
(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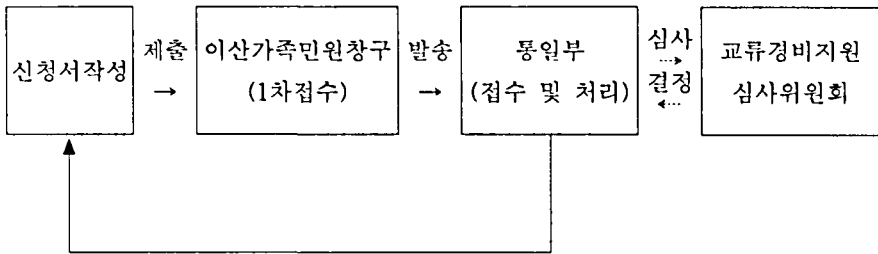
북한 방문신고서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신고자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연 락 처		전화번호		
	직 업		전화번호		
② 여권 번호				여권유효기간	
③ 방문 경위 (입북비자획득등)					
④ 방문목적(사유)					
⑤ 방문기간(일정)					
⑥ 방문경로 (경유지포함)					
⑦ 여행지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지위	관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고인 :				㉠(또는 서명)	
대사(총영사) 귀하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보고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진 3cm×4cm
	주소·연락처		(전화 :)				
	직 업		(전화 :)				
	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② 방문 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③ 방 문 목 적							
④ 출 발 일				⑤ 귀환일			
⑥ 방북신고미필사유							
⑦ 방문 및 귀환경로							
⑧ 방 문 일 정							
년 월 일		방 문 지 역		활동내용 및 면담자			
<p style="text-align: center;">※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p>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서류 :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또는 서명)</p> <p>대사(총영사) 귀하</p>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비지급 및 통보(* 처리기간 : 통일부 접수일부터 20일)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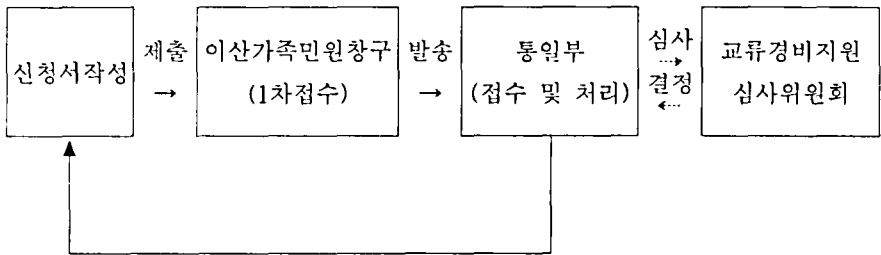
(앞면)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직위							
	현주소	(전화번호:)						
	출생지							
②상봉자	성명	연령	성별	현거주지			관계	
③중개인	성명	주선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④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시기:		지역:		
⑤상봉기간				~		⑥상봉장소		
⑦재산 및 소득사항 (배우자재산 및 소득포함) * 실제금액 또는 추정 가액 기재	재산액	부동산		있음(원), 해당없음()				
		예금 및 기타 재산		있음(원), 해당없음()				
		계		원				
	연간소득액	사업소득		있음(원), 해당없음()				
		근로소득		있음(원), 해당없음()				
		재산소득(임대료·이자수입) 및 기타 소득		있음(원), 해당없음()				
계		연간소득 원						
⑧기타 (해당자)	· 생활보호대상자 ()			⑨북한주민접촉 승인일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⑩소요경비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⑪수령방법	예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p>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수수료		
3. 여권사본 4. 상봉사진 5. 기타 입증서류(편지 등)						없음		
6.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비지급 및 통보(* 처리기간 : 통일부 접수일부터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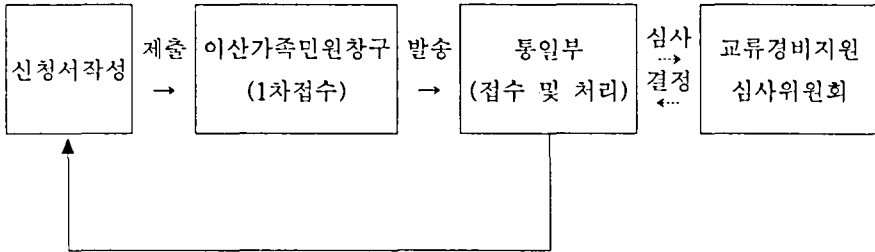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현 주 소	(전 화 :)	
	출 생 지		
	직 업	(전 화 :)	
②북한의 접촉가족 (서신 발신 자 등)	성 명	나 이	현 거 주 지
			소속 및 직 위
③생사확인자 인적 사항(편 지내용 등으로 확인된 자)			신청인과의 관계
			생사 여부
④교 류 중개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⑤접촉일자 및 장소			
⑥접 촉 방 법			
⑦기 타 (해당자)	· 생활보호대상자 ()		⑧북한주민접촉 승인일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⑨소요경비 내역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 품 지 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등)
⑩최초생사확인시기 및 지역			
⑪교류 지속기간	년 개월	⑫연간 교류 회수 (전화, 서신교환 등)	연 회(평균)
⑬수령방법	예금은행명 : _____		예금주 : _____
	계좌번호 : _____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b style="font-size: 1.2em;">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교류지속 입증자료(편지, 사진, 계약서 사본 등) 3.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 음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비지급 및 통보(* 처리기간 : 통일부 접수일부터 2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2001년 6월 4일 인쇄

2001년 6월 5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인도지원국

(이산가족1과 ☎ 3703-3271~4)

인쇄처 (주)성림문화

(☎ 2278-7011)
